

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2년 10월 20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2년 11월 3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80회 평창군의회(임시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
(2022년 11월 13일 상정·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과장 이영배)

가. 제안이유

행정안전부 상위법령에 불부합한 자치법규 조항(행정재산 관리수탁자 전대금지) 삭제 등으로 자치법규 일부를 개정 및 정비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다른 법인·단체 등에게 전대를 금지한 조항을 삭제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(안 제1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영옥)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제5항에 따르면
‘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’는
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
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’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본 조례안은
상위법의 불일치한 부분인 기존 조례에서의
‘행정재산 관리수탁자의 전대 금지’규정을 고쳐 재규정함으로서
법으로 보장된 수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
개정 취지는 타당하다 검토됩니다. 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4조제1항제5호 중 “양도 또는 전대(轉貸)”를 “양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의무 및 명의·책임)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에 관한 다음 각 호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5. 다른 법인·단체 등에게 <u>양도 또는 전대(轉貸)</u>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14조(의무 및 명의·책임) ① 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----- <u>양도</u>-----</p> <p>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